**심의면제 신청용 요약서**

**1. 연구 개요**

* **연구 제목**: "Participant Manual — UnifiedXRMotion vs Meta SDK"
* **연구 목적**: Unity 환경에서 두 SDK(UnifiedXRMotion, Meta SDK)를 활용한 아바타 및 핸드 모션 작업의 사용성 비교.
* **연구 대상자 활동**:
  + 매뉴얼에 따라 Unity 상에서 주어진 두 가지 과제를 수행 (전신 아바타, 핸드 전용).
  + 과제 수행 후 NASA-TLX(작업부하), SUS(사용성) 설문, 간단한 경험 설문 작성.
* **수집 데이터**:
  + 화면 녹화, 작업 시간, Unity 로그.
  +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일절 수집하지 않음.

**2. 연구 특성**

* **비침습적 연구**: 약물 투여, 혈액 채취, 생체 측정 등 없음.
* **신체적 변화 없음**: 연구는 단순 소프트웨어 사용 및 상호작용에 한정.
* **참여자 범위**: 일반 성인, 취약 집단 미포함.
* **데이터 안전성**: 수집 데이터로 개인식별 불가능.

**3. 심의면제 사유 (생명윤리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근거)**

1. **시행규칙 제13조 제1호 ①·②**
   * 침습적 행위가 없으며, 신체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단순 장비(PC, 소프트웨어)만 사용.
2. **시행규칙 제13조 제2호**
   * 연구대상자는 불특정 일반인.
   *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 수집·기록 없음.

따라서, 본 연구는 **심의면제 연구**에 해당합니다.

**4. 유의 사항**

* 본 연구는 심의면제 사유를 충족하나, 최종적인 면제 여부는 \*\*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\*\*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야 함.
* 일부 기관은 심의면제 대신 신속심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.

**결론:** 본 연구는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 ①·② 및 제2호에 의거하여 **심의면제 대상**임.